**<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회계학과 21911193 임지윤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7601)이 편찬한 《[삼국사기](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4028)》로,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 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512)의 일로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치고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산국은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고려사』 권1 태조 13년 8월(930년)에는 “우릉도(芋陵島)가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농업이 피해를 입자 농기구를 하사해 준 기록도 있다. 고려사에 한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여진의 침입으로 그 일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1157년에는 울릉도를 적극 개발하려다 중단한 기록이 나오며,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자주 등장한다.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15세기 초 태종은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쇄환정책을 실시한다. 태종 17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대책회의에서 ‘우산·무릉등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세종도 몇 차례나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을 순견하는 임무를 맡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이 쇄환정책을 계속 유지했으나, 우산도와 무릉도가 모두 여전히 조선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한편, 왜구의 침략이 줄어들자 강원 도민들이 본토의 조세부과와 역의 동원을 피해 울릉도와 독도로 피역하는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 감사 유계문은 무릉도의 우산이 비옥하여 산출이 많고, 또한 사람이 없어 왜노들이 점거할 우려가 있으니 무릉도에 군현을 설치하고, 백성을 살게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심하니 대신 매년 사람을 보내 탐색을 하고 토산물을 채취하라는 뜻을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통치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조정은 김연성과 군사 260명을 울릉도로 보내 정세를 살폈다. 이는 동해안 어민의 쇄환과 울릉도가 자국의 땅임을 확인하고자 한 중앙정부의 순심정책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강원도의 삼척영장이 이를 맡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숙종 19년에는 좌수영 소속의 능로군으로 복무했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이 일어난다. 안용복은 당대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자산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계를 받는다. 하지만 곧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고, ‘월경죄인’으로 감금당한다. 풀려난 안용복은 분개하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하고 돌아온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주는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금지를 공식화한다. 안용복의 활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야욕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조선은 1895년 도감제(島監制)를 실시하여 울릉도를 행정 관할한다. 울릉도의 인구가 1899년에는 2,000명에 이르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다시 시찰하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한다. 그리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1716호에 수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규목을 도벌해 가고 있었다. 1903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의 호수는 63호이며 벌목의 한정이 없어 일본순검에게 처음부터도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더 이상의 벌목은 금한다고 하니 “이 섬에서 벌목한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고, 한국정부와 일본 공사가 교섭하여 명령한 바가 없으니 이를 금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힘이 일본의 침투에 대해 무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을 거치며 중요성을 깨닫게 된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결정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정부에서 알고 반박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해 항의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조선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한일어업협정」, 「한국어업법」이 제정·공포된다. 이것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민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고, 고스란히 연안어장을 일본어민에게 내어주게 된다. 또한 일본은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공출과 징병, 징용을 행한다. 울릉도라고 이를 피해갈 순 없었고, 명이, 쑥, 칡 등을 먹고 생명을 이어 나가야 했다.

일제 강점기의 사료 중 독도에 관한 언급은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만든 『일본수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합방 이전의 『조선수로지』와 그 이후의 『일본수로지』 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떼어내어 일본의 영토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이후부터이다.

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지만, 곧이어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은 심하게 훼손되기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월 29일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한다. 이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영역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면서,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정받게 된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면적 18만 902m2(5만 4891평)의 화산섬으로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89개의 바위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일본에서는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157.5km 떨어져 있으며 정확한 위치는 '북위 37도14분26.8초', '동경 131도52분10.4초'이다.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우편번호는 40240이다. 본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년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4월 8일 리(里)로 행정 독립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가 되었다가 2005년 지번이 변경되었다.
섬은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http://terms.naver.com/ncrEntry.nhn?dicId=common_sense&ncrDocId=ba2_15-1-132)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현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되었다. 독도의 법적 소유권자는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다. 독도는 해양법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http://terms.naver.com/ncrEntry.nhn?dicId=common_sense&ncrDocId=ba2_2-2-84)(EEZ) 등의 기준이 되는 자연섬이 아닌 암초로 정해져 있다. 자연섬이 되려면 나무, 식수, 2명 이상의 상주 주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독도에는 1997년 11월 7일 총 177억 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특히 준공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데, 독도경비대 40여 명이 주둔해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등대와 선착장이 있으며, 민간전화도 개설돼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7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행정적인 위상을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현지명인 ‘석도(石島)’로 표기하여 대한제국의 관할구역으로 확인했다. 석도라는 명칭은 ‘돌로 된 섬’이라는 뜻으로, 현지 사람들이 부르던 ‘독섬’이라는 명칭을 뜻으로 풀이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당시 일반적인 한자 표기의 방식에 따르면 ‘독섬’이라는 명칭은 석도 또는 독도 어느 쪽으로도 표기할 수 있었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1906년에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한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 독도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군수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칙령 41호 공포 이후에 울릉도 관제에 대한 별도의 칙령이 공포된 적이 없으므로 울도 군수가 1900년의 칙령 41호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告示)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는데, 이는 독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가 무인도로서 국제법상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으므로 시마네 현에 편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주장해온 고유영토론과 모순되는 논리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무주지로 설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1905년의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는 국제법상 무효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1904년에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대여(貸與)를 신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독도를 한 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 대여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내무성 역시 우리나라 영토로 의심되는 불모의 땅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게 되면 외국에게 한국 병합의 야심이 있다고 오해받을 것을 우려했다. 일본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사실을 암암리에 인지했으면서도 관계국인 대한제국에 아무런 사실 확인이나 통보 없이 자국에 유리한 국제정세를 틈타 일방적으로 영토 편입 고시를 감행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뒤늦게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일본의 피보호국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외교적인 항의를 할 수 없었다. 1906년 3월에 시마네 현 관계자로부터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를 전해들은 울도 군수 심흥택은 그 사실을 바로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정부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심흥택의 보고가 있던 1906년 봄에 대한제국은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심흥택의 신속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항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언론도 일본의 독도 편입과 관련한 심흥택 군수의 보고 등을 보도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1696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울릉도로 건너가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서 일본 어민의 어로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그 후로도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무관하게 독도에만 출어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에도 시대에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인의 어로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이지 정부도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메이지 유신 다음 해 일본 신 정부는 조선에 외무성 관리들을 파견하여 내정을 정탐하였다.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3인은 귀국 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가 들어 있는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라는 제목의 복명서를 제출했다. 이 복명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이라는 항목에 ‘마츠시마는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隣島〕’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한 결과는 두 섬이 일본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77년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령을 내려주었다. 연합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기 위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근거가 없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독도를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고, 따라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의 역사](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81645)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215)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